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7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이성윤 · 김정호 · 조계원
문정복 · 장경태 · 최혁진
민형배 · 박희승 · 김용민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방지 차원에서, 법관·검사 등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제한 기간을 두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분야의 ‘전관예우’에 따른 폐해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뿌리내리고 있음.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을 이용하여 담당 변호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몰래변론’과 같이 음성적인 변호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해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

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등).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1년부터”를 “2년부터”로, “1년 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한다.

제112조에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의3.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의2.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 중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1항·제2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1항·제2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1항”으로 한다.

2의2.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임제한) ①·② (생략)	제31조(수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u>1년부터</u>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u>1년 동안</u>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③ ----- ----- ----- ----- ----- ----- ----- <u>2년부터</u> ----- ----- ----- ----- ----- ----- ----- ----- ----- ----- ----- <u>2년 동안</u> ----- -----.

친족인 경우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2조(벌칙)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4의2.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 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u><신설></u>	4의3. 제31조제1항제3호(제57 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 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 임한 변호사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설></u>	5의2.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 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한 자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3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
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
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
다)에 따른 사건을 수입한 변
호사

6. (생략)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
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
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
을 위반하여 수입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
항·제2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1항-----

_____.

② _____

_____.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
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8. 제89조의4제1항 · 제2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1항-----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